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13138
등록일자	2015.8.26.
결재일자	2015.8.27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 직위대리	
이우석	조현석	김희주	김용운	전결 08/27 주윤중	
협조자					

2016년도 기금운용 수립 계획



관련근거

-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자부훈령 제28호)

기금운용계획 작성대상

-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

주요 작성기준

-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
- 운용총칙은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
-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성
- 지출계획 수립시 '고유목적사업'과 '재무활동사업'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

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요일정

- 기금운용계획(안) 제출 ----- 2015. 9. 9 限
- 기금운용계획(안) 심의 조정 ----- 2015. 9.18 限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----- 2015.10. 2 限
-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확정 ----- 2015.10.23 限
-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구의회 제출 ----- 2015.11. 3

강 남 구

(기 획 예 산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훈령 제28호)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근거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의한 추진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직원(업무지침) 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 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문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O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/table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문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O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문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O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전 자치구 기금운용계획 수립·시행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016년도 기금운용 수립 계획

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및 시책추진사업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바,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I 2016년도 기금운용 방향

가 기본 방향

□ 기금운용 원칙

-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
-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,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
 - ※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·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

□ 기금운용 평가에 따른 정비대상 기금

-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·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, 일반·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
- 유사·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·폐지
-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
- '적립성기금'으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 재검토

나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

□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 조기집행

- 기금별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 등에 투자

□ 용자성기금 금리 결정전 시중은행 대출금리 파악

-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약정 전에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을 활용, 시중 대출금리 현황 파악 후 약정 체결
- (예) '04년 감사원 감사결과,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대출 금리를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게 약정한 사항이 지적됨

다 기금 「일몰제도」 이행

□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(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)

-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기금의 존속기간,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
- ※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□ 존속기간 연장

- 존속기한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,
-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
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

□ 「지방기금법」의 제정·시행('06. 1. 1)으로,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 실시

- '06년도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최초 실시, 전체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, '13년도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

II

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가 기본원칙

□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

-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
-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“조직 - 부문 - 정책사업 - 단위사업 - 세부사업 - 목” 체계로 작성
 - 사업구조는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」을 참조
-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

□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

-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‘고유목적사업’ 과 ‘재무활동사업’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
 - 단,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

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

- 적용대상 : 「지방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(12개 부서, 15개 기금)
-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
 -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,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

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법

□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

-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
-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
 - ※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(지방기금법 제9조)

-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·관·항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, 부문, 정책사업, 단위사업, 세부사업,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
-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(안) 작성기준 : 별첨 1 참조
-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작성양식 : 별첨 2 참조

라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

- 기금운용관(기금운용부서)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
- 시·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, 시·군·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



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
- 기금운용계획(안)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·심의
 - 일반회계,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·중복 여부 검토
 -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

- 다만,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□ 기금운용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

- 회의록(일시, 장소, 심의내용 등) 및 의결서 작성·관리
-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·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,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

Ⅲ 행정 사항

-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제출('15. 9. 9 限) ----- 기금운용부서
-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심의('15. 9. 18 限) ----- 기획예산과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출('15. 10. 2 限) ----- 기금운용부서

- 별 첨 1.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(안) 작성 기준 1부
 2.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작성 양식 1부. 끝.